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11. 24 선고 2020나300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11. 24 선고 2020나30009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2. 11 선고 2018가단31381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현종

변론 종결2020. 10. 27.

판결 선고2020. 11. 24.

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2. 11. 선고 2018가단3138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삼척시 D 임야 146702m²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7. 8. 25. 접수 제11381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주식회사 F가 동업으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이후 원고와 주식회사 F의 조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주식회사 F가 구성한 조합체인 피고 회사의 잔여재산에 해당하여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 후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말소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F가 2017. 3. 30.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1. 피고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러한 합작투자계약과는 별도로 피고 회사의 설립 이후인 2017.

8. 24. 피고 회사에게 위 회사가 추진하는 광산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도록 증여하고, 광산운영이 종료되면 소유권을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해산결의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고령토광산 사업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가 정한 약정해제 내지 해지 조건이 성취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 외에 피고 회사 주주의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와 주식회사 F가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을 들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주식회사 F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는 피고 회사의 청산절차에서 이행하여야 할 잔여채무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류경진

판사한동석

판사홍유정